

시행 2022.04.01.

천주교 인천교구 (하늘의 문 성당) 봉안시설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운영·관리하는 하늘의 문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유골을 안전하고 경건하게 보존하기 위한 봉안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봉안시설”이란 시신을 화장하여 유골을 그릇에 담아 매장하지 않고 안치하는 곳으로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등을 말한다.
2. “유골함”이란 주검을 태워 남은 유골을 담은 그릇을 말한다. 또는 “**봉안함**”이라 한다.
3. “**봉안단**”이란 봉안당 내 유골함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설치된 장소에 따라 **개인단**, **부부단**, **무연고단**으로 구분한다.
4. “**봉헌금**”이란 세상을 떠난 선종자들이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유족들에게도 기도를 통하여 육신은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을 교리를 선교하는 “성당 및 봉안시설”과 묘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천주교 신자 등이 내는 금원을 말한다.
5. “**봉헌자**”란 봉헌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소유권 및 관리권과 봉헌증서) ① 봉안시설의 소유권 및 관리권은 재단법인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하 ‘인천교구’라 한다.)에 있으며, 봉헌자는 봉안단을 사용한다.

- ② 봉안시설을 봉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천교구에 제출하고 인천교구에서 별도로 정한 봉헌금을 지정된 은행 계좌에 자율적으로 입금하며, 입금자 명의를 봉헌자 명의로 동일하여야 한다. 인천교구는 봉헌을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봉안시설 봉헌신고필증을 발급한다.
- ③ 봉안시설 사전 봉헌자는 “**봉안시설 봉헌증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봉안 위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착순 배정 또는 전산 신청에 의한다.
- ④ 봉헌금 영수증은 무통장 입금증으로 같음하며 봉헌자의 요청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 ⑤ 봉안시설 사전 봉헌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면 “**봉안시설 봉헌증서(별지 제2호의2 서식)**”를 발급하며, 봉헌증서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봉헌증서 재발급신청서를 인천교구에 제출하고, 인천교구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의거 봉안시설 봉헌증서를 재교부한다.
- ⑥ 봉헌 시설 사용 자격은 천주교 신자 및 천주교 신자의 친인척,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자로 한다.
- ⑦ 봉안시설에는 봉헌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다.

제4조(이용기한) 봉안시설의 이용기한은 30년으로 하며, 이용기한이 경과하면 15년 단위로 2회 연장할 수 있다. 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용기한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거나, 국가 정책에 따른 사용기한 제한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이용기한 및 연장 계약은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봉헌증서의 승계) ① 봉안시설 봉헌증서는 인천교구의 승인을 받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고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단, 인천교구의 승인 없는 승계에 관한 봉헌증서는 무효로 한다.

② 봉안시설 봉헌자는 “연고자” 중 봉헌증서 우선 승계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인천교구는 당초 봉헌자 유고 시 봉헌자가 지정한 우선 승계인에게 명의를 변경한다.

③ 우선 승계인을 지정하지 않고 당초 봉헌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고자 중에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봉헌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봉헌자와 우선 승계인은 인천교구가 요구하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인천교구에서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을 발급한다.

제6조(봉헌증서 반환) 봉헌자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봉헌증서를 반환해야 한다.

1. 봉헌자가 본인의 사유로 인천교구에 반환하는 경우
2. 인천교구의 승인 없이 봉헌증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승인을 받았지만 봉헌증서를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봉안시설을 본래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용기간 만료일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신심기금봉헌비를 납부하지 않음은 물론 사용기한의 연장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
5. 봉헌자가 안치된 유골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6.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인천교구에서 **임의 처리**하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상, 손괴, 시설물의 멸실 등에 대하여 인천교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7. 무연고 처리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유족의 동의 없이 인천교구에서 정한 위치(유택동산 등)로 이장할 수 있다.
8. 봉헌증서가 반환될 경우 봉헌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9. 사용기한은 2회로 한정하며, 봉헌자는 유골의 이장 등으로 인하여 봉안시설 사용이 종료된 경우 봉안시설을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신심기금봉헌비) ① 신심기금봉헌비는 30년 단위, 이후 15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하여 일시불로 봉헌한다.

② 봉헌자는 인천교구가 별도로 정한 신심기금봉헌비를 봉안일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은행 계좌로 봉헌하며, 인천교구는 기일과 **추석 및 설 명절에 합동미사**를 봉헌한다.

② 봉헌자는 **봉안 연장을 원하는 경우** 봉안단의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시점 3개월 전까지 인천교구가 정한 신심기금봉헌비를 봉헌한다.

③ 인천교구는 봉안이 완료되면 봉안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한다.

제8조(봉안시설 이장) 봉안시설 안치 이후 개합·이장 등의 사유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봉안당 개합이전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허가 통지서(별지 제4호의2 서식)**”를 발급하여 유골 인도는 가능하나 봉헌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제9조(관리) ① 인천교구는 봉안시설의 관리 책임을 지며, 봉헌자는 인천교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시설관리 유지를 외부업체에 맡길 수 없다.

② 봉헌자는 인천교구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석물 설치와 나무 식재, 인조물 등을 포함하여 추가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설물은 인천교구가 정한 기간까지 봉헌자가 스스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인천교구는 임의 처리하고 봉헌자에게 소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장례예식) ① 봉안 예절을 포함한 모든 장례예식은 천주교에서 허락한 예식만을 할 수 있으며, 인천교구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② 운구 예절을 포함한 봉안 예절은 천주교회의 기본 전례에 의거하여 인천교구의 방침 또는 본당, 단체의 주관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봉안 건물 내부에는 음식물, 꽃 종류 등의 물품 반입을 금지한다.

④ 봉안 건물 내부에서 일반적 제절(제사를 지내는 절차)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할 수 없다.

제11조(유골 안치 시 구비서류 제출) ① 봉헌자는 유골 안치 시 사전에 인천교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봉헌자는 인천교구가 요구하는 서류를 유골 안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제한) ① 봉헌자는 약정된 인원(위)의 화장된 유골만을 안치할 수 있으며, 인천교구의 승인 없이 봉안시설 내부에 유골 이외의 물건을 넣거나, 규정된 시설 이외의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특히 타 종교를 상징하는 **물품을 설치하는 등 교구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봉헌증서를 환수 조치하고 봉헌금은 환불 하지 않는다.

②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적법한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이어야 하며, 서로 다른 유골을 하나의 **봉안단** 및 **봉안함**에 안치할 수 없다.

③ 봉헌자는 인천교구가 정한 유골함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인은 안치 작업을 할 수 없다.

제13조(봉헌자의 신고의무) 봉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인천교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봉헌자의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2. 봉헌자의 사망 등으로 명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인천교구가 봉헌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및 기타 일반 관례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4. 상기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인천교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4조(기타)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인천교구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과 교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